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
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53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13,363백만원에서 20,916백만원으로 7,553백만원 증가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예치」 금액도 6,753백만원에서 14,306백만원으로 7,553백만원 증가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1,034	28,587	7,553
공공예금이자수입	557	557	-
민간융자금회수수입	7,034	7,034	-
기타회계전입금	0	0	-
기타그외수입	80	80	-
예치금 회수	13,363	20,916	7,553

<지출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1,034	28,587	7,553
비용자성 사업	8,631	8,631	-
용자성 사업	5,650	5,650	-
여유자금예치	6,753	14,306	7,553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'02년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을 운영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75억 5,3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**여유자금예치**를 75억 5,3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은 당초 지출계획(67억 5,300만원)보다 111.8%, 75억 5,300만원을 증액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9조(주거지원계정)

① (생략)

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저소득시민, 장애인, 노인(65세 이상)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

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과 행정안전부의 「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」⁴⁾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·지출 변경내용은 정책사업명이 아닌 “비용자성 사업, 융자성 사업, 예유자금예치”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,
 -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, ②**주거복지 수준 제고**로 기재하지 않고 정책사업의 범주를 기금운용계획중 자금운용계획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동 제정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,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“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”중 증감 및 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은 바, 이는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2.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

3.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4.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

5.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

6.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

4) 행정안전부, 「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'24. 7, p.283~284